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B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26. 7.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15.6백만원, 과징금 부과면제
임직원 등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7명, 자율처리필요사항 8건, 과태료 18.5백만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1.4.~2025.11.2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 등록 대상 신용정보인 기업신용공여정보* 및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대출 : 243건, 채무보증·채무인수 : 181건

** 연체정보(기업) : 14건

<관련 법규>

1.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2.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2)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매매로서, 채권가격·금리·통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도·스왑 거래이거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KB증권은 2021.1.1.~2025.7.18. 기간중 주식스왑 등 총 2,168건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2.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3) 외화증권투자현황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 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1.1.~2025.6.30. 기간중 매분기별 외화증권 투자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총 18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166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제1항

(4)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이하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지점·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2.15.~2025.2.14. 기간중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영업보고서를 5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다.

*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47일, 최대 63일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2항

(5)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KB증권 A 지점은 2021.7.1. ㉠ 채권 1건(2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채무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

(6)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KB증권은 이용자 정보를 유형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로 분류하고, 이를 데이터변환 솔루션을 통한 변환 작업 이후 테스트에 사용하면서

이용자 정보 변환 정책을 미흡하게 수립·운용하여 2021.1.1.~2025.11.11. 특정 유형의 이용자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에 대해 변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사용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

(7)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4.30. ~ 2025.6.2. 기간중 총 2종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변경·게시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5회),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아(1회)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8)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KB증권 B 지점 甲*은 2006.3.15.~2023.8.23.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총 63회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매매시점 기준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여,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필요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위험관리지침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을 제정·변경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9.28.~2024.12.26. 기간중 리스크관리규정 등 위험관리지침을 36회 제정·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4항

(2)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①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C 지점 乙 등 14명은 2018.10.23.~ 10.26. 기간중 일반투자자에게 ㉠을 판매(15건, 6.4억원)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C 지점 乙 등 8명은 같은 기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성향 파악 전*에 초고위험 상품인 ㉠의 투자권유(9건, 3.4억원)를 하였으며,

*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한 이후,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

D 지점 丙 등 6명은 같은 기간 투자성향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투자자 고객에게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새로 파악하지 않고* 투자권유(6건, 3억원) 하여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

<관련 법규>

1.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②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E 지점 丁 등 4명은 2018.10.22.~2020.10.25. ㉠를 판매(4건, 2.7억원) 하는 과정에서,

㉠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舊「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